

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 번호	신고일	년	월	일
-------	-----	---	---	---

귀국 전 해외체류지	(국가명)	(도시명)	(연락처)
해외체류 신고된 국내 주소지	세대주	성명 (서명 또는 인)	주민등록번호
	주소	※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인 경우 건축물의 이름, 동 번호 및 호수 작성 (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)	

* 귀국신고자 (총 명)

귀국한 사람	세대주와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비 고
1				
2				
3				
4				

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귀국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성명

주민등록번호

(서명 또는 인)

연락처

귀국신고자와의 관계

읍·면·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
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귀국한 사람의 입국 사실증명 확인 자료(귀국한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)
-------------	---

※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위임장

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귀국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한 사람 (귀국한 사람 본인)	성명 (서명 또는 인)	주민등록번호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

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귀국한 사람의 입국 사실증명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위임한 사람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귀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귀국 후 거주할 주소가 다르거나 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한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5항).
- 귀국한 사람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귀국한 사람 본인의 배우자, 직계혈족,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'위임장' 칸에 귀국한 사람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, 귀국한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·여권 등 신분증명서와 출입국 사실증명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.
- 귀국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·이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.
- 거짓으로 귀국신고를 하거나 전입신고 없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'거주불명 등록' 이 될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- 신고인은 '신고인'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, 해외체류신고된 국내 주소지의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'귀국신고자' 칸의 '세대주와의 관계' 칸에는 해외체류신고된 주소의 세대주와 귀국한 사람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.
- '연락처' 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,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.
- 주소가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(기숙사, 다중생활시설, 노인복지주택,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)인 경우 '건축물의 이름, 동 번호 및 호수' 를 작성하며,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를 생략하되,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합니다. '건축물의 이름, 동 번호 및 호수' 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 요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,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※ 다만,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라 상세주소(동, 층, 호)가 부여된 경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신고 가능합니다.

귀국신고서 접수증

* 신고서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,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.